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91

발의연월일: 2021. 5. 18.

발 의 자:고민정·김남국·박홍근

오영환 • 유정주 • 윤건영

윤준병 • 이규민 • 조오섭

최종윤ㆍ허 영ㆍ홍정민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, 언어 및 인지 발달, 정서적 신체적 건강, 아동안전, 아동학대 등 아동 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근 거로 활용해야 하는 자료이나 조사 주기가 5년으로 길기 때문에 최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 본문 중 "5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2년에 실시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아동종합실태조사) ① 보	제11조(아동종합실태조사) ①
건복지부장관은 <u>5년</u> 마다 아동	<u>3년</u>
의 양육 및 생활환경, 언어 및	
인지 발달, 정서적·신체적 건	
강, 아동안전, 아동학대 등 아	
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	
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기본계	
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	
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	
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렁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	
조사를 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